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

발의연월일 : 2026. 10. 21.

발 의 자 : 정미정, 임영신, 김동훈, 최문광, 김희성, 최정혜, 김도은, 김기준, 손정자, 이진환

1. 제안 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하여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점검 및 민간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근거 마련(안 제명,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 등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민간 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원함”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하여 남양주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민간 지킴이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점검,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 및 홍보·계도 등을 위하여 민간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함---------- ---------- ----------.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하여 남양주시가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민간 지킴이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점검,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 및 홍보·계도 등을 위하여 민간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붙 임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8조(민간 지킴이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점검,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 및 홍보·계도 등을 위하여 민간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 첨부 사유

○ 민간 지킴이단을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청결·관리 활동은 월2회. 홍보·계도 등 활동은 연2회로 계획할 경우, 연간 예상되는 비용은 약816천원으로 예상됨. 이에 연평균 1억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로 대체하고자 함

소 계	청결·관리 활동	홍보 등 활동	비 고
816천원	576천원 (월2회×12월×2명×12,000원)	240천원 (연2회×10명×12,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평내호평역에 1개소가 설치·운영중이며, 청결·관리업무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향후 「평화의 소녀상」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 확대 및 운영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복지국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붙 임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